|  |  |  |
| --- | --- | ---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산재보험조례>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2)**  인사부발[2016]2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  새로 개정한 <산재보험조례>를 보다 철저히 관철하고 의법행정(依法行政)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실제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와 고용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1급~4급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그 근친족이 산재보험의 장례보조금•부양친족위로금 지급 조건과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장례보조금•위로금 지급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그 근친족이 산재보험 또는 근로자기본양로보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는다.  2.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였음에도 정년퇴직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의거하여 도농근로자기본양로보험 대우를 누리는 자가 기존 고용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기간 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고용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고용업체가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였거나 도농근로자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지급받고 있는 자를 채용하였고 프로젝트별 보험가입 등 방식으로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업무적인 사유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산재보험조례> 제62조에 규정한 '추가 발생 비용'이라 함은 고용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후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 산재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업무적인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 가입 후 추가로 발생한 산재의료비, 산재재활비, 입원식사보조비, 통일계획지역 외에서 치료 시의 교통비•식사비•숙박비, 보조기구구매비, 생활간호비, 1급~4급 장애 근로자의 장해보조금 및 보험 가입 후 노동계약 해지 시의 일시산재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2)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 후 추가로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친족위로금을 지급한다.  4. 근로자가 고용업체가 조직한 활동 또는 고용업체의 파견으로 기타 업체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적 사유로 인한 부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예외이다.  5. 근로자가 업무적인 사유로 외국에 주재 중이고 고정된 주소와 명확한 근무•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산재 인정 시 주재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으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6. 근로자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고용업체와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노선을 왕복하는 경우를 출퇴근 도중으로 간주한다.  7. 고용업체의 등록지와 생산경영지가 서로 다른 통일계획지역에 있는 경우 원칙상 등록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록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고용업체가 생산경영지에서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무파견업체가 타 지역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노무파견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축시공기업이 프로젝트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보험가입지에서 산재 인정 및 노동능력 감정을 받고 보험가입지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지급받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생산경영지에서 산재 인정 및 노동능력 감정을 받아야 하고 생산경영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지급하여야 한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시간은 산재 인정 신청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조치를 취하는 등 인신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정식적으로 산재 인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사회보험기구의 미(未)등기, 서류 분실 등 사유로 인해 신청기한을 넘기게 된 경우;  (4) 당사자가 노동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5)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의 경우.  9. <산재보험조례> 제67조에 규정한 '산재 인정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산재보험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 진단•감정을 받았고 법정(法定) 산재 신청 기한 내(<산재보험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에 산재 인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산재 인정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지칭한다.  10. 산재 인정 신청인 또는 고용업체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 잘못된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관련 사실을 발견 한 후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이 의견은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이 의견이 공표되기 전의 관련 규정이 이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는 지체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년 3월 28일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执行《工伤保险条例》若干问题的意见（二）**  人社部发〔2016〕29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  为更好地贯彻执行新修订的《工伤保险条例》，提高依法行政能力和水平，妥善解决实际工作中的问题，保障职工和用人单位合法权益，现提出如下意见：  一、一级至四级工伤职工死亡，其近亲属同时符合领取工伤保险丧葬补助金、供养亲属抚恤金待遇和职工基本养老保险丧葬补助金、抚恤金待遇条件的，由其近亲属选择领取工伤保险或职工基本养老保险其中一种。  二、达到或超过法定退休年龄，但未办理退休手续或者未依法享受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待遇,继续在原用人单位工作期间受到事故伤害或患职业病的，用人单位依法承担工伤保险责任。  　　用人单位招用已经达到、超过法定退休年龄或已经领取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待遇的人员，在用工期间因工作原因受到事故伤害或患职业病的，如招用单位已按项目参保等方式为其缴纳工伤保险费的，应适用《工伤保险条例》。  　　三、《工伤保险条例》第六十二条规定的“新发生的费用”，是指用人单位参加工伤保险前发生工伤的职工，在参加工伤保险后新发生的费用。其中由工伤保险基金支付的费用，按不同情况予以处理：  　　（一）因工受伤的，支付参保后新发生的工伤医疗费、工伤康复费、住院伙食补助费、统筹地区以外就医交通食宿费、辅助器具配置费、生活护理费、一级至四级伤残职工伤残津贴，以及参保后解除劳动合同时的一次性工伤医疗补助金；  　　（二）因工死亡的，支付参保后新发生的符合条件的供养亲属抚恤金。  四、职工在参加用人单位组织或者受用人单位指派参加其他单位组织的活动中受到事故伤害的，应当视为工作原因，但参加与工作无关的活动除外。    　　五、职工因工作原因驻外，有固定的住所、有明确的作息时间，工伤认定时按照在驻在地当地正常工作的情形处理。  　　六、职工以上下班为目的、在合理时间内往返于工作单位和居住地之间的合理路线，视为上下班途中。  　　七、用人单位注册地与生产经营地不在同一统筹地区的，原则上应在注册地为职工参加工伤保险；未在注册地参加工伤保险的职工，可由用人单位在生产经营地为其参加工伤保险。  　　劳务派遣单位跨地区派遣劳动者，应根据《劳务派遣暂行规定》参加工伤保险。建筑施工企业按项目参保的，应在施工项目所在地参加工伤保险。  　　职工受到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后，在参保地进行工伤认定、劳动能力鉴定，并按照参保地的规定依法享受工伤保险待遇；未参加工伤保险的职工，应当在生产经营地进行工伤认定、劳动能力鉴定，并按照生产经营地的规定依法由用人单位支付工伤保险待遇。  八、有下列情形之一的，被延误的时间不计算在工伤认定申请时限内。  　　（一）受不可抗力影响的；  　　（二）职工由于被国家机关依法采取强制措施等人身自由受到限制不能申请工伤认定的；  　　（三）申请人正式提交了工伤认定申请，但因社会保险机构未登记或者材料遗失等原因造成申请超时限的；  　　（四）当事人就确认劳动关系申请劳动仲裁或提起民事诉讼的；  　　（五）其他符合法律法规规定的情形。  九、《工伤保险条例》第六十七条规定的“尚未完成工伤认定的”，是指在《工伤保险条例》施行前遭受事故伤害或被诊断鉴定为职业病，且在工伤认定申请法定时限内（从《工伤保险条例》施行之日起算）提出工伤认定申请，尚未做出工伤认定的情形。  十、因工伤认定申请人或者用人单位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导致工伤认定决定错误的，社会保险行政部门发现后，应当及时予以更正。    　　本意见自发文之日起执行，此前有关规定与本意见不一致的，按本意见执行。执行中有重大问题，请及时报告我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6年3月28日 |